「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6년 10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6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14,511천원**으로서, 이중 **2건**에 **663,536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계(2건)	**663,536천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614,536천원
○ 대관령면 청사 화재현장 복구	49,000천원 임.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그 사용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집행현황>

(단위: 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지출 건수	지출 결정액(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고
합계	**8,214,511,000**		**663,536,000**	**651,869,878**	**0**	**11,666,122**	
일반회계	**8,114,511,000**	**7**	663,536,000	651,869,878	0	11,666,122	
일반예비비	4,534,211,000	7	663,536,000	651,869,878	0	11,666,122	801-0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580,300,000	0	0	0	0	0	801-02
기타 특별회계	**100,000,000**	**0**	0	0	0	0	

※ 일반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계			**663,536,000**	**651,869,878**	**0**	**11,666,122**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885,000	1,885,000	-	-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군비 부담금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32,400,000	23,972,638	-	8,427,362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무 관리비	5,206,000	4,208,490	-	997,510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무 관리비	285,000	-	-	285,000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417,195,000	417,195,000	-	-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157,565,000	157,565,000	-	-	
회계과	읍면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49,000,000	47,043,750	-	1,956,250	대관령면 청사 화재현장 복구

❍ 202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14,511천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 2개 사업, 7건**에 **663,53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651,87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1,66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대관령면 청사 화재현장 복구”는 예기치 못한 화재 발생에 따라 청사의 긴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①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